

● 협회소식

제5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워크샵

제5차 방사선피폭선량평가 워크샵이 지난 5월6일~ 7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전력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센터(서울, 삼성동소재) 중회의실에서 열렸다.

최근 방사선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가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유용성으로 그 연구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사선방호의 기본이 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 따라서 금번 워크샵은 2000년도를 향한 방사선방호기술도약을 위한 판독기술 방향제시라는 명제하에 우리협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준비하게 되었다. 특히, 외부피폭선량 판독분야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제도화 될 내부피폭선량평가를 대비하여 국제동향 및 국내제도화 일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의미가 컸다.

방사선구역내 작업종사자 경남지역교육 시행

협회는 지난 5월11일과 12일 양일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기관의 방사선구역내 작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및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종사자가 작업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과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. 이번 교육에는 강사로 부산대 정운혁(물리학 과교수), 민병인(인재대 동위원소실 실장), 김덕규(동아대병원 핵의학과 과장)이 수고하였고 171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.

원자력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과학기술부공고 제1999 - 32호

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9년 4월 24일

과학기술부장관

1. 개정이유

·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,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

● 협회소식

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한 원자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·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발전용원자로 건설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전검사 대상 및 시기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27조)
- 나.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을 양도·합병하는 경우에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함(안 제32조의2)
- 다. 원자로시설, 핵연료주기시설,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기술기준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옮김으로써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기준의 반영을 용이하도록 함(안 제50조 내지 제101조, 제155조 내지 제164조, 제181조 내지 제191조, 제207조 내지 제219조)
- 라. 마약류 등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 하여금 매년 운전원의 약물복용·정신질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비정상적인 운전 가능성을 차단함(안 제106조)
- 마.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·이동사용·판매하는 자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(안 제197조 및 제199조의2)
- 바. 방사선기기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절차 및 제작검사기준 등을 정함(안 제200조의3 및 제200조의4)
- 사. 면허증을 훼손 분실한 자에 대한 재교부 절차를 간소화하고,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증 반납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(안 제291조 및 제292조)
- 아. 건설·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, 핵연료주기시설, 폐기시설등의 주변의 위해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대상시설을 정함(안 제297조의8)
- 자. 국내·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탐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국 환경방사능감시 업무를 규정함(안 제302조의2)

3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